



MINI Market Report

국가	중국
제품	산양산삼청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중국 마케팅 방안	1
1. 현지 시장 특징	1
2. 현지 시장 진출 TIP	2
II. 중국 시장 정보	4
1. 산삼 수입 추이	4
2. 보건식품 생산 및 판매 동향	5
3. 보건식품 소비 동향	5
III. 중국 유통 정보	7
1. 보건식품 유통구조	7
2. 식품 유통채널	8
3. 식품 유통구조	10
IV. 중국 통관 정보	11
1. 관세 및 기타 세금	11
2. 수입 및 통관 절차	12
3. 통관 유의사항	15
V. 중국 검역 정보	18
1. 수입 식품의 검험검역	18
2. 수출 식품의 검험검역	21
VI. 중국 라벨링 정보	23
1. 식품 라벨 관리 규정	23
2.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 검험 감독 관리 규정	26
3. 보건식품 표시	37
VII. 중국 바이어 정보	40

※ 참고자료

I 중국 마케팅 방안

1. 현지 시장 특징

□ 수입 보건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수차례 식품안전 관련 사고로 인해 중국인 소비자들의 국내 식품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 국내 보건식품은 가짜가 많고 여러 단계의 대리상들이 판매하는 유통방식 때문에 이윤 창출을 위한 과다 홍보 진행함에 따라 제품의 효능을 보지 못한 소비자들이 국내제품을 외면하고 있음
- 최근 빈번한 식품약품 안전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권위가 있고 신뢰할만한 온라인 마켓 혹은 또는 해외에 있는 친척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국민소득 증가, 건강에 대한 중시 등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수입 보건식품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중국 보건식품에 대한 수입 장벽

- 중국에서는 수입 보건식품에 대한 허가 규제가 엄격하지만 일단 진출하면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지 않은 편임
- 중국 진출을 위한 보건식품 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최소 수천 만원 이상 소요됨

□ 중국 수입보건식품 유통 특징

- 중국 마켓에서 보건식품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식약품 생산판매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도 많음
- 중국에서 보건식품 판매하는 방식은 주로 대리점을 통한 판매, 온라인 마켓 판매 및 회의 판매 세 가지 방식이 있음

□ 중국 소비 특성

- 한류 및 중한 교류가 빈번해 지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편임
- 한약재가 양약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인식이 있어, 한약으로 된 약품이나 보건의식품을 보다 선호하는 편임
-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식물 엑기스를 자주 음용하지 않음. 대신 중국 소비자들이 즐기는 물에 타 먹는 "양생차"(养生茶:중국 기능성 Tea를 말하는 현지용어)가 있음
- 중국은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는 가운데 특히 노년층, 퇴직 간부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명절이나 방문 시 또는 연례회에 선물 세트를 주고받는 관습이 보편적으로 있으며 고가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2. 현지 시장 진출 TIP

□ 참신한 제품 이미지 부각 필요

- 한국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제품의 참신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용방식을 제시하면 바람직할 것임
- 중국 노령화로 인해 관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친환경 고급 제품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식품이 아닌 식품으로 중국 시장 진출 필요

- 한국 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더라도 중국 현지에서는 보건의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보건의식품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지에서 보건의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등록 절차도 까다로운 관계로 우선 식품으로 등록하여 중국 마켓에 진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国药电商(중국 국약 그룹 온라인 마켓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보건의식품 온라인 마켓임) 보건의식품 담당자 Ms Xu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되고 있는 해외 보건의식품은 우선 식품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전언

-
- 2014년 8월 뉴스에 따르면, 중국 보건식품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 중국 중앙 정부 고위층에서 심의중이며 보건식품 분류 및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홍콩이나 대만에 선 진출하고 내륙시장에 후 진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 보건식품 등록은 필수

- 중국에 해외 보건식품은 현재 식품으로 등록하고 판매 중인 경우가 대부분임
- 보건식품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 보증 제품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건식품 등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등록 시 유효기간 5년)

II 중국 시장 정보

1. 산삼 수입 추이

- 산양산삼은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로 분류되며, 그 중 야생 인삼 (미국 인삼을 제외한다) HS CODE 「1211.20.20」로 파악되었음
 - 산삼청은 제13류 야채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것으로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우뭇가사리와 기타 점액과 농화제의 기타에 해당되는 HS CODE 「1302.19.90」로 파악되었음

1211.20.20	Wild ginseng (other than American ginseng)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1211.20.20」에 대한 중국 수입 추이

< 중국 식물 추출액 수입 통계 >

Partner Country	Value (USD)			% Share			% Change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3/2012
World	52,434,390	45,797,528	46,563,000	100.00	100.00	100.00	1.67
Korea South	37,135,482	26,764,887	21,693,941	70.82	58.44	46.59	- 18.95
Canada	7,809,130	8,929,188	12,473,518	14.89	19.50	26.79	39.69
United States	4,354,383	8,305,322	11,015,341	8.30	18.13	23.66	32.63
Korea North	3,122,906	1,747,875	1,380,200	5.96	3.82	2.96	- 21.04
China	0	48,862	0	0.00	0.11	0.00	- 100.00
Japan	12,489	0	0	0.02	0.00	0.00	0.00
Taiwan	0	1,394	0	0.00	0.00	0.00	- 100.00

출처 : GTA (www.tradestatistics.com/gta)

- 중국의 인삼, 홍삼, 산삼과 같은 식물성 추출물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 캐나다, 미국, 북한 등의 순으로 집계됨

- 한국의 식물성 추출물 제품의 대 중국 수출액은 2011년 약 3713만 달러, 2012년 약 2676만 달러, 2013년 약 2,169만 달러, 전체 비중 2011년 70.8%, 2012년 58.4%, 2013년 46.5%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2. 보건식품 생산 및 판매 동향

□ 보건식품 중국내 생산 현황

-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中国医药保健品进出口商会)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보건식품 생산업체만 1,700개로 집계되었음
- 보건식품 연간 생산액 5,600억 위안(약 95조원) 그중 연간 생산액 몇 억 원 이상 기업이 70개사
- 2015년에는 보건식품 생산 업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보건식품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옵션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함

□ 중국 내 수입 보건식품 판매 현황

- 최근 중국 수입 보건식품 판매량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4년까지 중국 식약처에 등록된 수입보건식품 총 727개이며 주로 미국, 홍콩, 일본 제품임. 제품군 중 면역력증가 제품이 26%로 제일 많음 그 다음은 영양보충제로 18%
- 중국 식약처에 등록된 한국 보건식품은 총 33개이며 정관장에서 등록한 인삼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음

3. 보건식품 소비 동향

□ 중국 내 보건식품 소비현황

- 중국 식약처 통계에 의하면, 중국보건식품 소비자 가운데 중장년, 노년층 약 5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친환경, 유기농 건강식을 선호하며 국내 제품보다는 해외 제품을 선호하고 가격보다는 품질 및 안전성을 더 많이 고려하고 제품을 선택함

□ 중국 보건의식품 소비 트렌드

- 중국에서 보건의식품에 대한 소비 붐은 2001년 주해강기유한공사(珠海康奇有限公司)에 출시한 腦白金(나오바이쩐,보건의식품브랜드)이 TV광고에서 히트를 치면서 중국 전 국민에게 보건의식품 구매 욕구 심어줌
- 중국 TV광고의 전설로 알려진 腦白金 광고는 "효"(孝)라는 마케팅 키워드를 이용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은 부모님께 드리는 필수 '선물'이라는 이미지 부각에 크게 성공
-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들은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보건의식품구매 보다는 선물 주고받기 위한 보건의식품 구매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됨

III 중국 유통 정보

1. 보건식품 유통구조

□ 중국 내 보건식품(보건식품) 유통현황

- 중국 내에서 보건식품 유통구조는 지속성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다단계 대리 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업체도 생존 주기 약 3년 내지 5년으로 집계 됨
- 보건식품에 대한 등록 규제가 엄격하고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가 취약한 특징 때문 에 수입 보건식품 경우,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유통되 는 과정에서 도매상들은 가짜를 섞거나 희석하는 경우가 많음
- 보건식품에 대한 과다 홍보와 기능에 대한 과장된 광고는 현재 중국 보건식품생산 및 판매업체가 보편적으로 취하는 마케팅 전략임 소비자들은 이런 과장된 광고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고가지만 좋은 품질의 제품, 즉 국가 인증이 있거나 수입 된 보건식품을 선호 함
- 수입보건식품의 경우 중국 현지 sales office를 열고 판매하거나 입소문으로 생산국 방문 시 구매하고 중국에 돌아가서 판매하는 방식, 또는 생산국에 있는 관 계자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하는 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등 복잡하고 다양한 유통망을 걸쳐있음

< 보건식품 유통현황 >



출처: EC21 Marketing & Consulting

2. 식품 유통 채널(식품으로 중국 시장 진출시)

□ 중국 식품 유통업체

- 중국의 슈퍼마켓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1급 도시 외에도 최근 2급, 3급 도시에까지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슈퍼마켓은 중국 동부 지역에 특히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 중 베이징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열악한 물류 인프라 수준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대형 슈퍼마켓은 식품과 비식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사용하는 고객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유통업체 현황 >

&	대형 슈퍼마켓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점/ 노점상	도매상	기타
2001	20	28	17	7	28
2002	26	22	13	9	30
2003	32	20	16	3	29

출처: Worldpanel China Access Asia Limited (2009)

1) 주요 현지 슈퍼마켓

- 련화 슈퍼마켓 주식 유한공사 (联华超市股份有限公司) : 199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중국 최대 상업 소매 기업이 되었으며, 대형 종합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형성한 소비자가 가장 믿는 상업 브랜드이며 상하이,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 안휘, 장서, 광둥, 산둥, 산시, 허난, 허베이, 랴오닝, 지린, 신장, 네이멍 등 20개성과 자치구에 100여개의 도시에 연쇄 경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베이징 화련그룹 투자 지주회사 (北京华联集团投资控股有限公司) : 국가 상무부가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15대 전국 대형 소매 기업 중 하나로, 국제 백화점 협회의 유일한 중국 소매 기업 회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수한 사회 인지도와 명예를 얻어 중국 판매업의 유명 브랜드가 되었음
- 상하이 농공상 슈퍼마켓 유한공사 (上海农工商超市有限公司) : 1994년도에 설립되어 2002년 상하이 통계국이 발표한 제 12차 상하이 100대 기업 중 12위를 차

지하였고 현재 8개의 회사와 연쇄 경영 연수 대학으로 구성되어 2002년 국가 농업부 등 9개의 부서는 “농업 산업화 국가 중점 우수 기업”으로 인정함

- 우메이 지주 그룹 유한공사 (物美控股集团有限公司) : 슈퍼마켓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한 그룹회사로, 1994년 종합 슈퍼마켓이 설립되어 줄곧 뚜렷한 성취를 얻음
- 신이차 슈퍼마켓 유한공사 (新一佳超市有限公司) : 1995년도에 설립되어 광동성 유통의 선진적 기업으로 국가 중점 양성의 20대 상업 기업이며 10년간 전국 각 지역에 106개의 연쇄 지점을 설립함
- 화룬완자 유한공사 (华润万家有限公司) : 중국의 소매판매 체인기업 중 하나로,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며 홍콩에서 규모가 가장 큰 화룬 유한공사의 계열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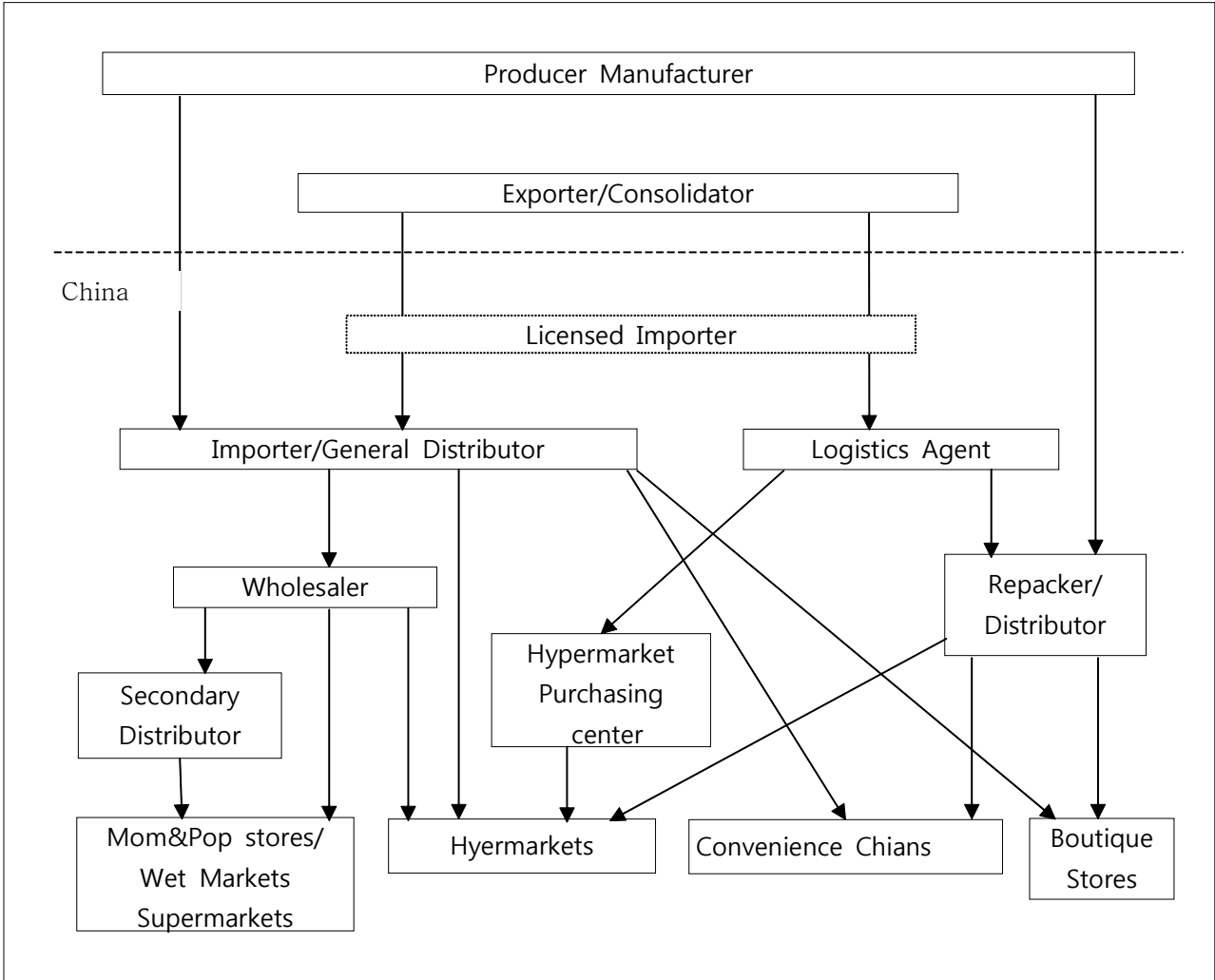
2) 주요 외국계 슈퍼마켓

- 월마트 (沃尔玛) : 현재 전 세계 15개 국가에 8,400개 상점을 설립하여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선전에 처음으로 상점을 설립함 중국에서도 다양한 업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개 성의 101개 도시에 189개 상점을 설립해 50,000건 이상의 취업 기회를 제공함
- 까르푸 (家乐福) : 1959년에 유럽에서 설립된 대형 소매상으로 세계 제2대 국제 소매 연쇄 그룹임 1995년 중국에 진출 후, 국제 선진적인 슈퍼마켓 관리 방식을 통해 사회 각 계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함 현재 중국 25개 도시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109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설립함
- TESCO (乐购) : 1932년 영국에서 설립된 최대 소매 회사로 세계 3대 소매상 중 하나이며 2004년 중국에 진출해 화동, 화베이, 화난 세 지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에 주력하여 22개 도시에 58개 대형 슈퍼마켓을 설립하였으며 17,600명의 직원을 보유함

3. 식품 유통구조

- 전반적으로 중국의 유통구조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나마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과 같은 주요도시에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역사가 긴 유통업체들도 많이 위치해 있음

< 중국의 내부 유통 경로 >



출처 : KATI(www.kati.net)

- 일반적으로 식품은 온도변화나 그 특성 상 목적지인 소비자에 도달하기 전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도시는 단일 식품 유통업체가 담당하여 수입과 적하, 보존과 운송 등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음

IV 중국 통관 정보

1. 관세 및 기타 세금

□ 관세율

- 산삼청은 1302.19.90에 분류되며 식물 엑기스 적용되는 세율은 FTA_APTA 15%임

< 관세율 >

HS CODE	품목	기본세율	부가가치세
1211.20.20	야생 인삼(미국 인삼을 제외한다)	90%	13%
1302	야채 수액과 엑스 ; 펙틴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것으로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우뚝가사리와 기타 점액과 농화제:	-	-
1302.19.90	기타	80%	1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기타 세금

-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관세지급필가격의 사정, 원산지 확정을 통해 관세지급필가격과 세율을 확정하여 세금과 비용을 계산함
- 수입관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관세	수입관세=과세가격×증가관세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증량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 화물 실제 수입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과세가격×관세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슬라이딩 관세	수입관세(증가)=과세가격×잠정세율 수입관세(증량)=화물수량×잠정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수입 소비세 계산

구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소비세=징세가격×소비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1-소비세 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증량징수	소비세=소비품 수량×소비세 세율	
복합징수	소비세=증가 소비세+증량 소비세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수입 증치세 계산

구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증치세=징세가격×증치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율+소비세	- 과세가격과 관세를 계산 - 소비세를 계산 - 증치세를 계산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2. 수입 및 통관 절차

(1) 수입 검사 기관

- 중국정부는 2002년 4월 28일 수출입상품 검사법을 개정하여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을 설립하고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이 중국각지에 설치한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 기구는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관리함
- 중국의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는 ‘검사검역 상품목록표’에 포함된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수출입통관 수속 전에 반드시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기구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검역 상품목록표’에 포함된 수입상품의 수입자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세관은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세관신고서에 날인한 ‘등록접수필’ 인장에 근거하여 상품검사에는 관여하지 않음
- 중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은 보건식품의 범주이므로, 보건식품의 수입 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위생부로부터 ‘보건식품 수입 비준증서’를 받아야 하며, 수입시 항구 검험·검역기관은 이 비준증서에 의하여 화물에 대한 검험·검역을 진행하며 합격되어야 수입할 수 있음

(2) 수입 절차

□ 수입식품위생검역제도

- 수입식품검사제도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6장 제30조 규정에 따라 중국인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 수속 전에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기구에서 위생감독 및 검사를 진행하며 합격한 후 세관은 위생검사합격증서를 근거로 수입을 허가
- 수입식품이 중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해정도에 따라 반송, 폐기, 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 재처리하여야 함
- 수입상품이 도착되면 해당지역의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의 식품검사 감독처에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기관에서는 통관신고서에 검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등록접수인을 날인하며, 검사 합격된 상품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합격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통관신고서 상에 합격인증 날인을 함
- 식품 위생검사를 받는 범위는 수출입 상품 검사종류표에 열거되어 있으며, 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 식품: 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하는 각종의 식품과 원료 및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약용성분을 가미한 식품.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제외함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중 중국의 국가위생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은 국가 위생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위생기준이 없는 식품은 수출국정보에서 발급한 위생평가서를 제출하여 도착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국무원 위생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수입식품검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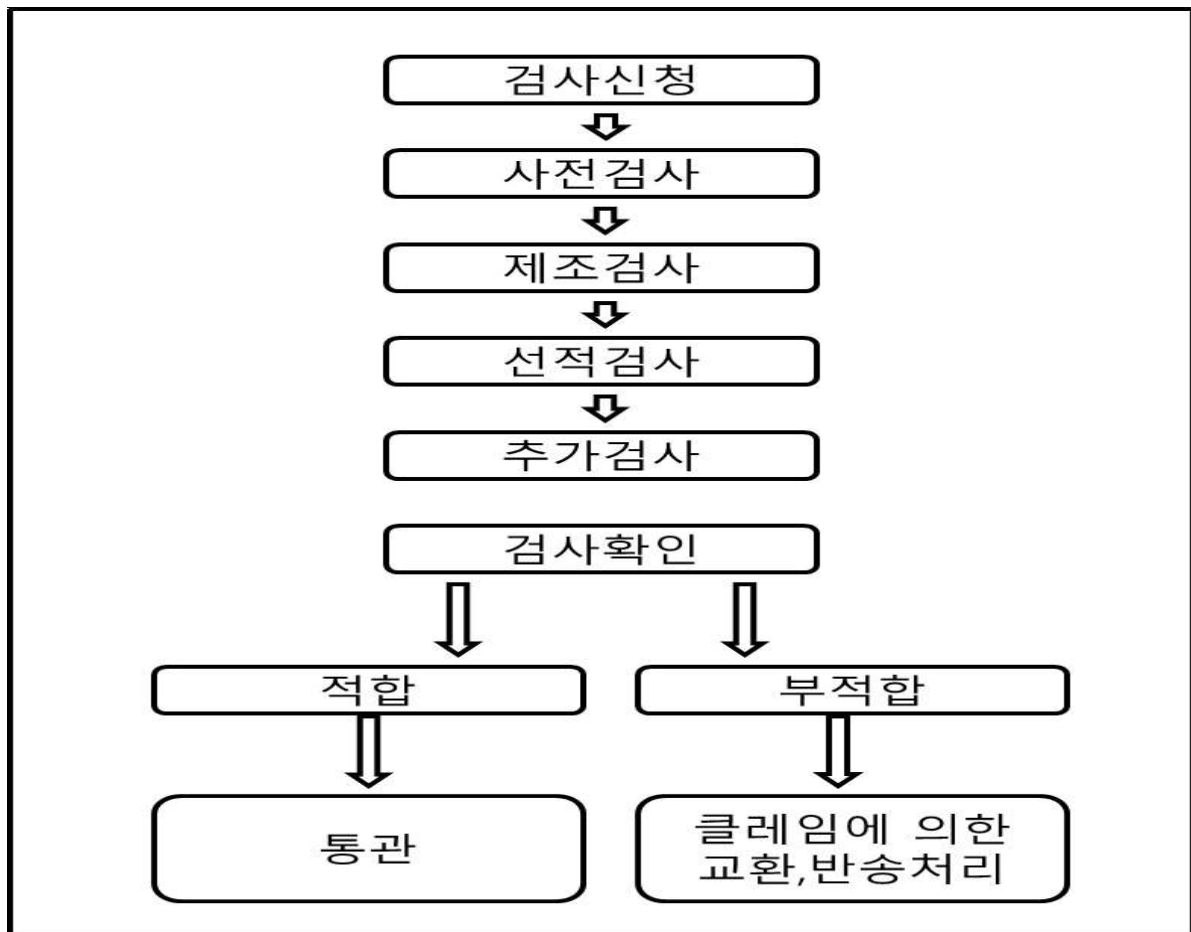
- 수입식품검사는 대외무역계약서에 약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지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역항, 도착지 또는 검사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분할포장이 된 식품 또는 수량 및 중량이 부족한 식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역항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검사신청을 받은 검역당국은 우선 현장 확인을 하고 검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규정에 따라 시료채취하며 시료채취량은 소량의 수입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1/1,000의 비율로 채취함. 매 품종에 대한 샘플의 채취는 최소 3건 이상이고 중량은 매 건당 0.5kg 이상으로 함. 채취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규정된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함
- 검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시료접수 후 6일 이내 공개하며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7일 이내에 수입식품위생증서를 발급하여야하며 발급 후 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이외에는 재검사를 하지 않음

- 수입식품검사절차

- 중화인민공화국 상품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검사신청, 사전검사, 제조검사, 선적검사, 검사확인, 추가검사, 클레임에 의한 교환·반송처리, 등의 순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함
- 법정검사가 필요한 수입식품이 도착하면 수하인은 도착항 또는 도착지의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해야 하며 검사기관에서 통관신고서에 검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등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세관은 통관신고서에 날인된 검사등록인에 근거하여 수입식품을 통관하게 된다. 수하인은 기한 내에 대외무역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B/L) 등의 구비서류를 상품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음. 검사확인은 검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확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음

< 중국 수입식품검사 절차 >



□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 수입식품 검사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통관신청서
- 수입화물무역계약서
- 식품위생검역신청서
- 수출국발급 식품검사증서
- 수출국발급 원산지증명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화증권
- 식품명칭목록 (중국어)
- 화물수취통지서
- 통관위탁서

□ 유통과정 중 불량 수입식품 관리

- 중국 품질감독총국에서 2014년7월1일부터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시행세칙”을 공표하고 실행함. 중국 국내 식품 안전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 불량 또는 자격미달의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발표한 제도이며, 그전엔 일정한 시간 주기를 두고 불량 수입제품에 대한 리스트만 정부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발표하는 정도에만 그쳤지만 새로 제정한 제도에 따르면, 품질감독총국에서는 불량 수입식품을 리스트 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유통업체 모두 리스트 업 하여 처벌을 가한다고 정했다. 예를 들어, 수입식품 국외 생산 기업 등록 목록에서 제외시켜 취득한 수입식품등록자격을 폐지하거나 정지시키는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규정함

3. 통관 유의사항

□ 소요서류

- 검험검역과 세관 신고절차에서의 소요서류는 구체 수입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래서는 북경시를 예로 들어 식품 수입 시의 관련 절차에서의 소요서류에 관하여 검토

- 검험검역 시의 소요서류

- 수입물품세관신고서
- 무역계약
- 포장명세서(装箱单)
- B/L
- 운송증빙서류(货运发票)
- 원산지증명
- 위생평가자료
- 기타 요청서류

- 예포장식품(预包装食品) 수입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에 아래 조건에도 부합되어야 함

- 물품주 또는 그 대리인이 이미 북경검험검역부서에서 수출입예포장식품표식의 등록을 하여 등록코드를 취득하였을 경우, 동 등록코드로 신고할 수 있음

- 물품주 또는 그 대리인이 북경검험검역부서에서 수출입예포장식품표식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중문표식샘플, 샘플의 번역본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 그중, 중문표식의 샘플은 GB7718-2004(预包装食品标签通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세관 통관 시의 소요서류

- 수출입물품세관신고서
- 发票
- 무역계약
- 포장리스트
- B/L
- 적하목록(舱单)
- 세관신고대행 권한위임장
- 수출입 관련 허가증서
- 기타 서류

□ 수입 규제 제도

- 규제내용 (관세 및 비관세 규제 등)

- 해당사항 없음

□ 필수 인증

< 필수 인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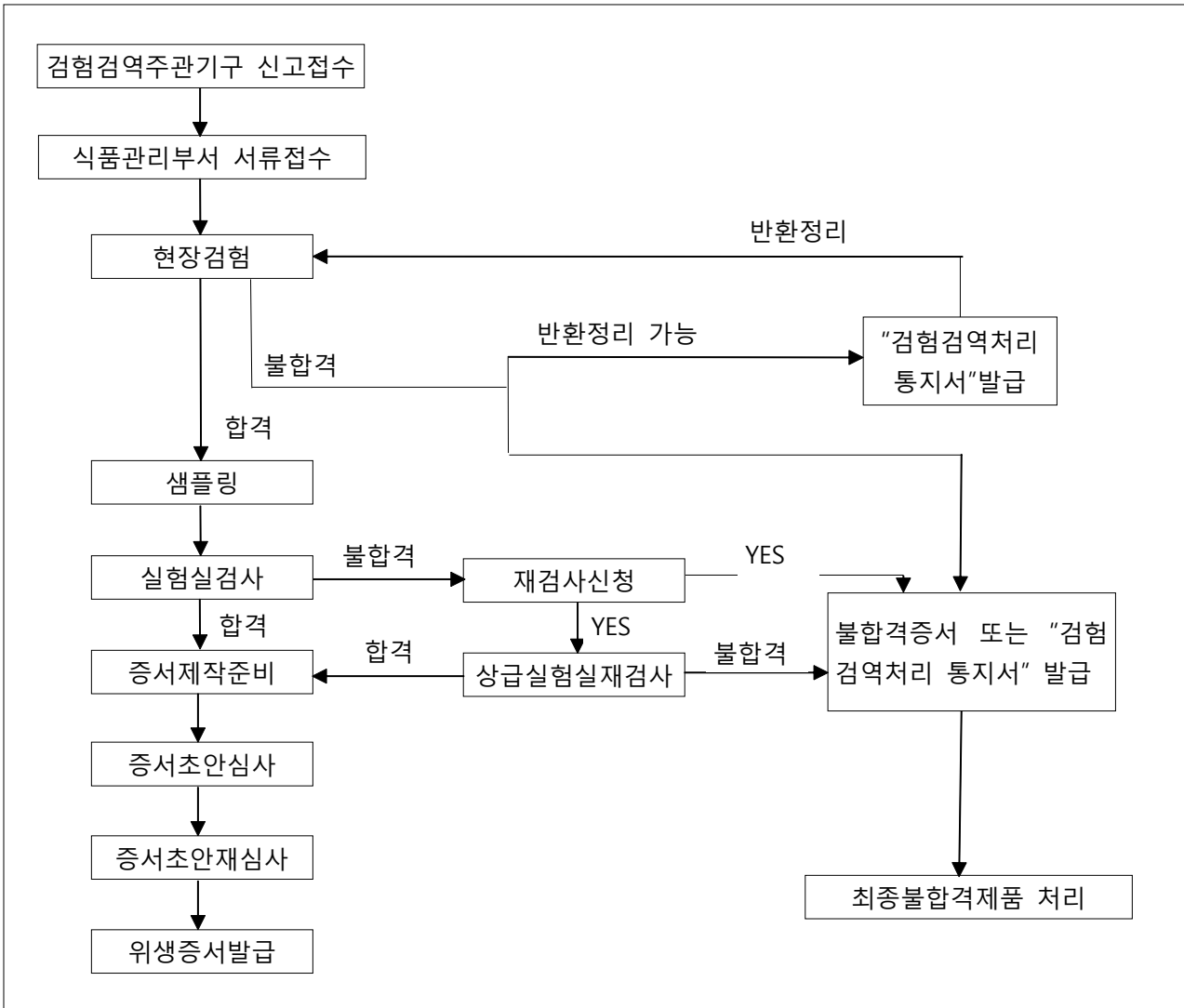
검사검역 카테고리	인증서 명칭	감독관리조건	인증서 명칭
P	수입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A	수입제품통관증 (入境货物通关单)
R	수입식품위행감독검증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B	수출제품통관증 (出境货物通关单)
Q	수출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출처 : 중국식약청 (<http://www.sfda.gov.cn>)

V 중국 검역 정보

1. 수입 식품의 검험검역

< 수입식품 검험검역절차 >



□ 수입 식품의 검험검역

- 검험검역범위: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도구 및 설비, 기타 식품과 관련된 물품
- 제출서류: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식품 원산지증명서,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 수입식품 관련 중국 규정

- 지난 2011년 9월 13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검험검역국은 ‘수입출식품 안전관리 방법(총국령 제 144호)’ 을 발표함
- 同 방법은 식품수입절차 및 요구기준을 상세히 명시함
- 이 방법이 시행되면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식품 수입 기업 등록여부, 수출상 및 대리상, 검역심사, 항구검역검사, 수령인, 안전검사, 위법기업리스트, 리콜제도 등 관리체계가 더욱 명확히 확립될 것임
- 同 방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2010년 8월 9일 위생부가 발표한 ‘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수입허가 및 관리규정’ 에는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기준이 명시돼 있음
- 이 규정이 정의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이란 해외에서 생산·경영되고 수입된 전례가 없는 식품으로 중국정부가 제정한 별도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임
- 이러한 식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위생부 위생감독센터에 신청서, 배합 및 성분, 생산공정, 기업표준 및 검사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 및 포장, 해외 생산허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의 발행 절차

<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 발행 절차 >

구분	자세한 내용
1	입국지 출입국 검사 검역국에 검사, 검역을 신고함
2	현장 검사 검역 : 식품에 농약, 화학 비료, 화학품이 뒤섞여 오염, 부패, 이물질, 곰팡이, 벌레 등이 있는지의 여부, 냉동식품의 상태, 포장 정비 정도, 위생 요구의 부한 정도 등을 살핌. 포장 식품의 경우, 상표 라벨, 생산일, 유효기한, 품종, 수량 검사 등이 신청한 상황 일치하는 지를 봄. 화물의 현장 상황을 기본적으로 판단 한 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함. 샘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험실에 보냄. 수입 식품은 원칙적으로 천 분의 1의 비율로 샘플을 모으며, 품종마다, 3개 이상 샘플을 모음
3	실험실 검사

4	검사 결과의 판정 :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 및 표준에 따라 현장 검역 상황, 제공된 자료와 실험실 검사 결과에 대해 종합 판정을 내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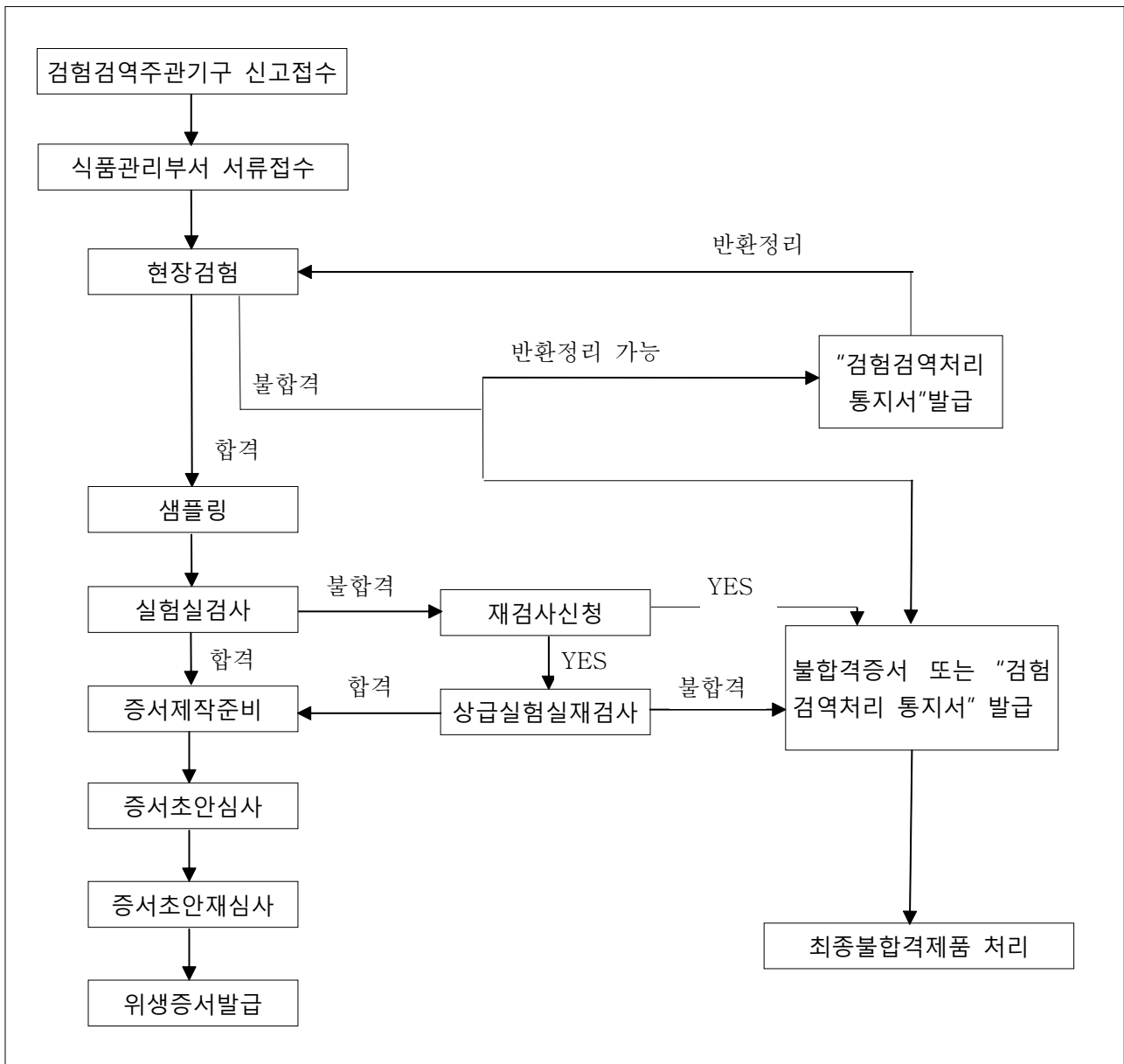
출처 :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소요시간 및 비용

- 중국 기관이 한국기업이 발송한 자료를 토대로 중문 라벨을 제작하는데 일주일의 소요됨
- 일반화물이 전체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까지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반 가량임
-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10여 종의 수출품은 전체 절차에 10~15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됨
-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완료 약 3일, 통관 후 중문라벨검사에 열흘, 라벨 초보검사 합격 후 무작위추출검사에 10~15일, 위생허가증과 라벨합격증을 받는데 3일이 소요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검역 비용방법’ 이 규정된 바는 다음과 같음
 - 식품 검역비용은 일반적으로 400위안을 넘지 않음
 - 수출입 식품라벨의 경우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은 2년임
 - 통관비는 300위안임
 -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0.0045%로 부과됨
 -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28m³)임
 -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임
 -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임
- 대행비의 경우 수출품 가격의 1% 내외로 책정되며, 최소 2,000위안임

2. 수출식품의 검험검역

< 수출식품 검험검역절차 >



출처 : KATI (www.kati.net)

□ 검험검역범위

- 수출식품(예를 들면: 각종 식용, 음용의 제품과 원료, 전통적 습관에 의해 약품에 포함된 식품)과 수출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 등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하위와 같이 준비하면 됨

-
- 출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또는 판매확인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생산업체(가공공장, 냉장창고, 창고 등을 포함)의 위생등록 또는 등기번호

VI 중국 라벨링 정보

1. 식품 라벨 관리 규정

□ 총칙

-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표기와 관리에 적용(2조)
- 본 규정의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에 부착, 인쇄, 표기하여 식품의 명칭, 품질 등급, 중량, 식용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 부호, 수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의 총칭(3조)
- 국가질검총국은 직책범위내에서 전국 식품라벨의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조직하며 현급이상 지방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관할지역 식품라벨 감독관리사업을 책임(4조)

□ 식품라벨의 표기내용

- 식품명칭 :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표명하는 식품명칭을 표기(6조)

< 식품명칭 표기요구 >

1. 국가표준, 산업표준이 식품명칭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칭을 사용
2.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상용명칭 혹은 속명을 사용
3. 창신, 특이, 음역, 메이커, 지역속어, 상표 등 오해가 쉬운 식품명칭을 사용시 식품명칭 옆에 동일 글자크기로 1~2항이 규정한 명칭 혹은 분류명칭을 표시
4. 2종 혹은 이상 식품을 혼합하여 외관이 균일하여 호상 분리가 어려운 식품은 식품의 혼합속성과 분류명칭을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
5. 동, 식물을 원료로 특정 가공공정으로 제조하여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성을 모방한 식품은 명칭 앞에 인조(人造), 모방(仿) 혹은 소(素) 등 문자를 붙여야하며 식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분류명칭을 명시해야함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산지 : 식품 산지 표기(7조)
- 생산자&주소표기 : 법에 따라 등록, 등기한 품질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자명칭과 주소를 표기(8조)

< 생산자&주소 기타규정 >

1.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본사 혹은 자회사는 각자 명칭과 주소로 표기
2.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지사 혹은 생산기지는 본사와 지사 혹은 생사기지명칭, 주소 혹은 본사 명칭과 주소로 표기
3. 위탁생산으로 판매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생산허가증관리를 하는 식품은 위탁기업에 관련 생산허가증이 있어야하며 양자명칭, 주소 혹은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4. 분할포장(分装)식품은 분할포장업체의 명칭주소를 표기하고 분할포장(分装)문자 명시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생산일자&유통기한표기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선명하게 표기해야하며 특수저장 조건 표기. 알콜함량 10%(포함)이상 음료주, 식초, 식염, 고체설탕은 유통기한 표기면제가능. 일자표기방법은 국가표준 규정 혹은 년, 월, 일로 표기(9조)
- 정량포장식품 내용량 표기 : 고체와 액체가 각각 포함된 식품은 내용량 외 고형물 함량 표기.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동일 포장면에 표기. 내용량은 <정량포장상품계량 감독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표기(10조)
- 배합원료 표기 : 배합원료는 생산가공시 사용량 순서에 따라 표기.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를 식품에 직접 사용시 식품첨가제항목에 명칭표기. 기타 식품첨가제 사용시 명칭과 종류 혹은 코드 표기(11조)
- 집행표준 표기 : 집행한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번호 혹은 등록된 기업표준 번호 표기(12조)
- 식품집행표준에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공정 표기를 요구시 식품라벨에 표기(13조)
- 생산허가증관리 식품은 식품라벨에 식품생산허가증번호와 QS마크 표기(14조)
- 비 식용제품이 혼입되어 부주의로 인체상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라벨에 경고표기와 함께 중문경고설명 표기(15조)

< 중문설명을 표기해야하는 상황 >

1. 의학임상에서 특수사용자에서 쉽게 위해를 조성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2. 이온화 방사선 혹은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한 경우
3. 유전자변형식품 혹은 법정유전자변형원료가 함유된 경우
4.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에 중문설명을 규정한 경우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명칭 혹은 설명에 <영양(营养)>, <강화(强化)> 표기시 국가표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17조)

< 식품라벨의 표기 금지사항(18조) >

1. 질병예방, 치료작용 명시 혹은 암시
2. 비 보건식품이 보건작용 명시 혹은 암시
3. 사기 혹은 오도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혹은 소개
4. 제품 설명서에 근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5. 문자 혹은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차별성 묘사
6. 국기, 국장 혹은 인민폐 사용
7. 기타법률, 법규와 표주이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식품라벨의 표기 위법행위(19조) >

1.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조 혹은 허위표시
2. 식품산지위조, 기타 생산자의 명칭, 주소 위조 혹은 사칭
3. 생산허가증 표기와 번호 위조, 사칭, 변조
4.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행위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주의사항

- 식품라벨의 표시형식

1.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함(20조)
2. 식품라벨은 최소 판매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21조)
3. 한 개 판매단위 포장에 부동한 품종, 다양한 독립포장 식품이 포함된 경우 매개 독립포장의 식품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22조)
4. 식품라벨은 분명하고 선명해야함(23조)
5. 식품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 단 상표는 제외, 식품라벨은 중문과 외국문자 동시 사용 가능하며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크기는 ≤중문, 단 등록상표는 제외(24조)
6. 식품 혹은 포장 최대표면면적>20cm²인 경우 식품라벨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수자의 높이는 1.8mm보다 커야하며 최대표면면적<10cm²인 경우 식품라벨에 식품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와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표기내용은 규정에 따름(25조)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2.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 검험 감독 관리 규정

□ 총칙

- 본 규정은 수출입 정량 포장 식품 라벨(설명서 포함)의 검험과 감독관리 업무에 적용(2조)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 정량 포장 식품 라벨 검험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이하 검험검역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를 책임(4조)

□ 라벨검험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 제공자료(6조) >

1. 원본 라벨 샘플과 번역본
2.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 샘플
3. 라벨에 표기한 수입상, 경소상 혹은 대리상의 공상영업집조 사본
4.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에 내용을 강조, 예로 수상, 증서획득, 법정산지, 지리표기 혹은 기타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영양성분 함량을 표기한 경우 부합성 증명자료를 제출
5. 첨부해야할 기타증서 혹은 증명문서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검험검역기구는 라벨에 대하여 격식, 지면검사를 진행하고 라벨의 표기내용의 부합 여부 검측을 진행. 부합여부 검측은 수출입정량포장식품의 일상검험감독업무와 결합하여 진행하며 단독으로 샘플을 채취하지 않음(7조)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은 검사합격 후 검사를 시행한 검험검역기구에서 등록증빙을 발급(8조)

< 라벨 불합격 상황(9조) >

1. 수입정량포장식품이 중문라벨이 없는 경우
2. 수입정량포장식품 격식, 지면검사결과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표준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부합여부검사결과 라벨표기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수입 정량 포장 식품 라벨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1회적으로 수입

상 혹은 대리인에게 부합되지 않은 항목의 전부내용을 고지.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 폐기처분을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처리. 기타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하며 기술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반품 혹은 폐기처리(10조)

- 처음으로 수입하여 라벨검사에서 합격한 정량포장식품은 재수입에서 라벨등록증빙과 중국어, 외국어 라벨샘플만 제출(12조)

□ 감독관리

- 국가질검총국은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사업무에 대하여 관리하며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합격된 수입포장식품라벨에 대하여 등록(14조)
-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이 검사 불합격이나 기술처리가 가능한 경우 재검사합격전까지는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5조)
-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는 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에서 불합격 사례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6조)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 동 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량포장식품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라벨에 적용하며 정량포장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석판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용어의 정의

- 정량포장식품 :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그리고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 식품라벨 : 식품포장상의 문자, 도형, 부호와 모든 설명물
- 성분 : 제조 혹은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상품에 존재(성질을 바꾼 형식존재도 포함)하는 그 어떤 물질, 식품첨가제도 포함
- 생산일자/제조일자 : 식품이 최종상품으로 되는 일자, 포장일자나 캔에 든 일자도

포함. 즉 식품 포장물 혹은 용기 중에 포장된 후 최종판매단위로 가는(완성)날짜

- 품질보증기간 : 정량포장식품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 기한 내 상품은 판매에 적합하며 라벨에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설명한 특수 품질을 유지함
- 규격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포장식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순합량과 내포된 개수에 관계에 대한 설명
- 주요전시면 : 소비자가 정량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면

□ 기본요구

- 정량포장식품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봉건미신, 선정성과 기타식품을 헐뜯거나 혹은 과학 영양상식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됨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여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글자크기 혹은 색깔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함
- 정량포장식품라벨의 모든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모종의 성질이 다른 상품과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됨
-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비보건식품은 보건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은 포장물(용기)과 분리되지 않아야 함
- 정량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병음 및 소수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나 상응한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됨
 - 동시에 외국어 사용이 가능하나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함.(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소, 외국 판매대리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함(국외등록상표 제외)
-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 최대표면 면적이 35cm²보다 클 때 강제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 한 판매단위의 포장 안에 다른 종류, 날개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포장이 있을 경우, 날개포장식품마다 각각 표시하여야 함
 - 외포장물을 통해 뚜렷하게 내포장물 혹은 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포장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 표시내용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량포장식품 라벨 내용
 - 일반요구 : 식품명칭, 배합원료, 내용량, 규격, 제조상과(혹은)판매자,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조건, 식품위생허가증번호, 제품기준번호와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식품명칭(食品名称)
 - 식품라벨의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모 식품의 한 개 혹은 몇 개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우 그중의 하나 혹은 등효(等效) 명칭을 선택하여야 함.
 -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명칭” 속에 사람들이 식품속성을 오해하는 문자 혹은 용어(단어)가 들어있을 때 표시한 명칭의 옆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진실속성을 나타내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소비자들이 식품의 진실속성, 물리상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 식품명칭 앞 혹은 식품명칭 뒤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붙일 수 있음. 예를 들면 “건조한, 농축한, 복원한, 훈제한, 기름에 튀긴, 가루상태인, 알갱이 모양인” 등이 있음

- 식품진실속성이 전용명칭이 문자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식품속성에 오해를 가지게 하였을 경우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 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예를 들면 ‘주스음료’의 ‘주스’가 반드시 동일한 글자크기로 하여야 함

<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① 영양성분표	○ 식품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NRV) 대비 백분율 표기 * 양식 : <붙임 1> 참조
② 강제표기사항 (4 + 1)	○ 4대 핵심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열량(에너지)
③ 트랜스지방(산)표기 (反式脂肪(酸))	○ 경화유지 및 부분경화 유지가 식품 배합원료에 함유되거나 생산과정 중 사용할 경우 영양성분표 상에 트랜스지방(산) 함량으로 표기해야 함
④ 선택표기사항	○ 강제표기 사항 외 각종 비타민, 엽산, 아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망간, 불소 등 기타 성분
⑤ 기타사항	○ 열량 및 영양성분 설명 시 '함유', '고저', '유무', '증감' 등의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요구 및 기준조건

< 포장식품 강제영양라벨 표기 면제 제품(해당사항 없음) >

- 생선식품, 날고기, 물고기, 야채, 과일, 난류(달걀, 오리알 등).
- 알코올함량≥0.5%의 음료주류.
- 포장 총면적≤100cm² 혹은 최대 표면면적≤20cm²의 식품
- 즉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품
- 포장된 음용수
- 일일 섭취량≤10g 혹은 10ml인 예포장식품
- 기타법률법규표준에 규정하는 영양라벨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포장식품.
-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 예포장식품이 포장에 어떠한 영양정보를 나타낼 경우, 본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해야 함

출처 : <http://www.nhfpc.gov.cn/>

□ 라벨링 표시 방법

- 법률상의 의무 표시 및 절차 :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정형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품명, 원산지, 제조사, 생산 일자, 번호 또는 바코드, 조합 원료, 주요 성분, 유통기한, 식용 또는 사용 방법 등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식품 및 식품 첨가제 제품 설명서 내용은 과장과 거짓 등 광고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나옴
- 임의 표시: 같은 라벨상 임의 표시 내용으로는 제품 번호, 식용 방법, 에너지와 영양소 등이 있음

< 영양성분표 양식1 >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或NRV%
能量 (열량)	千焦 (kJ)	%
蛋白质 (단백질)	克 (g)	%
脂肪 (지방)	克 (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 (g)	%
钠 (나트륨)	毫克 (mg)	%

< 영양성분표 양식2 >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或NRV%
能量 (열량)	千焦 (kJ)	%
蛋白质 (단백질)	克 (g)	%
脂肪 (지방)	克 (g)	%
- 饱和脂肪 (포화지방)	克 (g)	%
胆固醇 (콜레스테롤)	毫克 (m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 (g)	%
- 糖 (-당)	克 (g)	
膳食纤维 (섬유질)	克 (g)	%
钠 (납)	毫克 (mg)	%
维生素A (비타민A)	微克视黄醇当量 (μg RE)	%
钙 (칼슘)	毫克 (mg)	%

< 영양성분표 양식3 >

营养成分表 nutrition information

项目	每100克 (g) 或100毫升 (mL) 或每份 per100g/100mL or per serving	营养素参考值%或NRV%
能量/energy	千焦 (kJ)	%
蛋白质/protein	克 (g)	%
脂肪/fat	克 (g)	%
碳水化合物/carbohydrate	克 (g)	%
钠/sodium	毫克 (mg)	%

< 영양성분표 양식4 >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 或NRV%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 或NRV%
能量	千焦 (kJ)	%	碳水化合物	克 (g)	%
蛋白质	克 (g)	%	钠	毫克 (mg)	%
脂肪	克 (g)	%	-	-	%

< 영양성분표 양식5 >

营养成分/100g: 能量XXkJ, 蛋白质XXg, 脂肪XXg 碳水化合物XXg 钠XXmg
(영양성분/100g: 열량XXkJ 단백질XXg 지방XXg 탄수화물XXg 나트륨XXmg)

< 영양성분표 양식6 >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或NRV%
能量	千焦 (kJ)	%
蛋白质	克 (g)	%
脂肪	克 (g)	%
碳水化合物	克 (g)	%
钠	毫克 (mg)	%

□ 예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표기의 요구 및 조건

구분	함량표기방식	함량요구	제한조건
열량	무열량	≤17kJ/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지방에서 생긴 열량≤총 열량의 50%
	저열량	≤170kJ/100g 고체 ≤80kJ/100ml 액체	
단백질	저단백질	단백질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	
	저단백질 내원, 혹은 단백질 함유	매 100g 함량≥10% NRV 매 100ml 함량≥5%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5% NRV	
	단백질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함량≥20% NRV 매 100ml 함량≥10%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10NRV	
지방	무지방 혹은 불포함	≤0.5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지방	≤0.3g/100g 고체; ≤1.5g/100ml 액체	
	비계가 적다	지방함량≤10%	축육과 가금만 제한
	탈지	액체 우유과 요구르트: 지방함량≤0.5%; 분유: 지방함량≤1.5%	유제품만 제한
	불포화지방이 없다 혹은 불포함	≤0.1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킴
	저포화지방	≤1.5g/100g 고체 ≤0.75g/100ml 액체	1.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킴 2. 여기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이 없다 혹은 불포함	≤0.3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없다 혹은 불포함	≤5m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동시에 저포화지방과 지방의 표기함량요구 및 제한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저 콜레스테롤	≤20mg/100g 고체 ≤10mg/100ml 액체	
탄수화물(설탕)	설탕이 없음 혹은 불포함	≤0.5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당	≤5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유당	유당함량≤2g/100g(ml)	유제품만 제한
	유당이 없다	유당함량≤0.5g/100g(ml)	

식이섬유	식이섬유 내원 혹은 식이섬유를 함유하다	≥3g/100g(고체) ≥1.5g/100ml(액체) 혹은 ≥1.5g/420kJ	식이섬유 총량이 함량요구에 부합함;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혹은 단체성분 중 임의의 하나에 함량요구에 부합함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혹은 내원이 좋다	≥6g/100g(고체) ≥3g/100ml(액체) 혹은 ≥1.5g/420kJ	
나트륨	나트륨이 없다 혹은 불포함	≤5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나트륨' 표기의 표기에 부합한 경우 '염'자로 '납'자를 대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염', '염분 줄임'
	나트륨 함량이 아주 낮다	≤40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나트륨 함량이 적다	≤120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비타민	비타민×내원 혹은 비타민 함유×	매 100g≥15% NRV 매 100ml≥7.5% NRV 혹은 매 420kJ≥5%NRV	'다양한 비타민'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표기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비타민 함량이 높음 혹은 풍부함	매 100g≥30% NRV 매 100ml≥15% NRV 혹은 매 420kJ≥10%NRV	'다양한 비타민' 대량으로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표기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광물질(나트륨 안 포함)	×내원, 혹은 ×함유	매 100g≥15% NRV 매 100ml≥7.5% NRV 혹은 매 420kJ≥5%NRV	'다양한 광물질'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의 표기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높음 혹은 ×풍부함	매 100g≥30% NRV 매 100ml≥15% NRV 혹은 매 420kJ≥10%NRV	'다양한 광물질' 대량으로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의 표기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뭉'으로 식품계량단위로 삼을 때 100g(ml)의 함량요구에 부합하여만 표기할 수 있음.			

□ 함량표기 및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불포함, 무	영'0', 없음. 100% 불포함, 무, 0%	함유, 내원	제공, 함유, 있음
아주 낮다	아주 적다	대량으로 함유, 높다	내원이 좋다. ×× 풍부하다. 풍부한 ××, 높은×× 제공함
낮음	적음. 지방이 적다*		

* '지방이 적다.' 저지방표기에만 적용됨

□ 열량과 영양성분비교표기의 요구 및 조건

비교표기의 방식	요구	조건
열량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열량이 25% 이상 감소함	참고식품(기준식품)이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속성의 식품이어야 함
단백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단백질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지방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지방이 25% 이상 감소함	
콜레스테롤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콜레스테롤이 25% 이상 감소함	
탄수화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탄수화물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설탕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설탕이 25% 이상 감소함	
식이섬유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식이섬유가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나트륨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나트륨이 25% 이상 감소함	
광물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광물질이 25% 이상 감소함	
비타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비타민이 25% 이상 감소함	

자료 출처 (<http://www.nhfpc.gov.cn>)

□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10월 22일에 “식품 안전법” 과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27일에 발표한 “식품라벨관리규정” 을 수정

<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제1조	식품라벨 감독관리를 강화, 식품라벨 표기를 규범화, 품질사기를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품질법”, “식품위생법”,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및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함	식품라벨 감독관리를 강화, 식품라벨 표기를 규범화, 품질사기를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제품품질법”,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함
제8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등기하고 제품품질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이어야 함	식품라벨은 반드시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식을 표기해야 함.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등기하고 제품품질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이어야 함
제9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게 식품의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해야 함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게 식품의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해야 하며,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저장조건을 표기해야 함
제9조 제2항	식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저장조건과 연관될 경우에 반드시 식품의 특정 저장조건을 표기해야 함. 에틸알코올의 함량이 10% 이상(10%를 포함)인 음료주, 식포, 식용소금, 고태 설탕류는 품질보증기간의 표기를 면제할 수 있음	에틸알코올의 함량이 10% 이상(10%를 포함)인 음료주, 식포, 식용소금, 고태 설탕류는 품질보증기간의 표기를 면제할 수 있음
제10조 제1항	정량포장의 식품라벨은 반드시 순함량을 표기해야 함. 고체, 액체의 2가지 상태 물질의 식품에 대해 순함량을 표기하는 외에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정량포장의 식품라벨은 반드시 순함량을 표기해야 하고,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규격을 표기해야 함. 고체, 액체의 2가지 상태 물질의 식품에 대해 순함량을 표기하는 외에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제11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식품의 배합원료리스트를 표기해야 함	식품라벨은 반드시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원료리스트를 표기해야 함
제11조 제4항	없음	영아와 유아, 기타 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식과 보조 간식은 그 라벨에 주요 영양성분과 함량도 표기해야 함
제12조	식품라벨은 반드시 기업이 적용하는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의 번호 또는 등록된 기업표준의 번호를 표기해야 함	식품라벨은 반드시 기업이 적용하는 제품표준의 코드를 표기해야 함
제26조	본 규정의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에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

	벌금을 부과함	과함
제28조	본 규정의 제9조, 제15조를 위반하여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본 규정의 제15조를 위반하여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제30조	생략	삭제

3. 보건식품 표시

(1) 보건식품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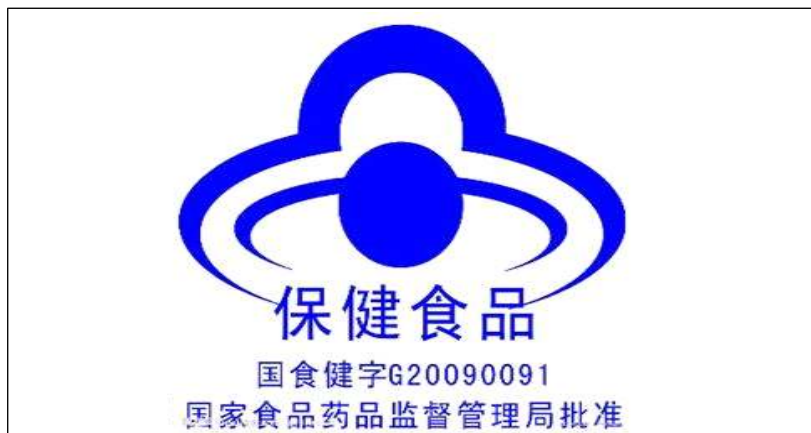
하단의 표와 같이 6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표시함

< 중국 보건식품 표시·광고심사의 원칙 >

	원칙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관련 법률, 법규, 규칙, 기준, 규범의 규정에 부합할 것 2. 제품의 실제속성을 반영하여 간단명료하고 난해하지 않으며 중문언어습관에 부합할 것 3. 통용명은 이미 등록 허가된 약품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4. 브랜드명은 제품의 등록업체 혹은 기타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5. 통용명은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치료 작용을 명시 혹은 암시하거나 효능을 과장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 6. 속성명은 제품의 객관적 행태를 표명하고 규범적이고 정확해야 함

중국 보건식품의 라이선스

< 보건식품등록번호 및 보건식품 인증 Blue Hat >



- 보건식품 등록 성공하면 중국 식약처에서 지정한 国食健字J***** (신청년도4자리+시리얼넘버 4자리)라는 수입보건식품등록번호를 가지게 되며 본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04년 뒤로 식약처에 등록한 모든 보건식품은 모두 위와 같은 등록 번호를 가짐

(2) 보건식품의 라벨링 및 설명서

□ 보건식품의 라벨링

- 보건식품의 라벨링 표기해야할 항목

- 제품명
- 보건식품 마크 및 보건식품 승인/등록 번호
- 제품 포장 규격(순함량 및 고체형태물질함량)
- 보조재료 (함량이 많은 것 순으로 나열, 식품첨가제는 제일 뒤쪽에 위치)
- 효과성분/표지성 성분 및 함량
- 보건기능
- 적응군
- 부적응군
- 식용량과 식용방식
-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예, 2014-08-12)
- 보관방법
- 주의사항
- 제품생산기업이름
- 생산기업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수입보건식품일 경우 중국 국내 수입상 또는 대리상 명칭 및 원산지국가를 표기)

□ 라벨 및 설명서 내용

- 1996년 7월18일 중국 위생부에서 공식 발표한 <보건식품라벨규정>을 따라야 하고, 본 규정은 총 9조항으로 되어 있고 국내, 국외 모든 보건식품에 해당됨
- 보건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즉 보건식품 명칭, 기능, 기능성분, 적응군, 보건식품등록번호는 중국 식약처(CFDA)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해야함
-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인 텍스트, 이미지, 기호로 보건식품의 기능을 과장하거나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를 해서는 안 됨

-
- 상품 설명서 및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중문과 외국어(수입보건식품일 경우)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외국어 폰트가 중문 폰트보다 크면 안 됨
 - 계량 단위 사용은 액체 제품이면, 볼륨단위 ml 또는 L 로 표기, 고체 또는 반고체 제품이면 질량단위 g 또는 kg로 표기

VII 중국 바이어 정보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에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KATI.NET 내 중국 시장정보
- KOTRA 중국 (광저우) 무역관 자료
- 중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v.cn/>)
- 중국 식약청 (<http://www.sda.gov.cn/>)
- GTA (<http://www.tradestatics.com/gta/>)
- Alibaba 내 바이어 디렉토리